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1.9.10.)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2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5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7	거창군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4
8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8
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75
10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1
1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8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8. 10. 권순모 의원 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준수 등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이용지침 등의 제작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마. 안전문화 조성 등에 대해 규정(안 제7조)
- 바. 경비의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8. 18. ~ 8. 2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 마련과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 제작, 실태조사, 이용자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8. 10. 신재화 의원 외 10인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춘구 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라.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안 제4조)
- 마.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 바. 점검장비 지원(안 제6조)
- 사.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7조)
- 아. 실태조사(안 제8조)
- 자. 협 조(안 제9조)
- 차.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파. 점검사항의 표시 등(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8. ~ 8. 2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특별관리 대상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 예방과 군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 임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기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점검 장비 지원)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거나 점검 지침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사항의 표시 등) ① 군수는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시장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과 요금 감면 차량의 경우 10원 미만 단위로 정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안 별표1)

구 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주간제	야간제
현 행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	500	250	5,000	50,000	35,000
		노외 주차장	300	150	3,000	30,000	21,000
개정안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9. ~ 8.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용어 변경과 시장주차장(노외주차장 포함)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발생하는 장기주차와 요금감면차량 정산 애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등이</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등이</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금액: 원)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당	1일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1.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 최초 30분으로 봄
2.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3. 주차 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춘구 환경과장]

거창창포원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관리·운영하고 지역 여건이나 국내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한 시설별 운영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현행)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변경)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법률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됨에 따라 법 적용 규정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제2조·제5조·제6조)

다. 정기휴원일 명확화, 임시휴원일 규칙으로 위임(안 제8조)

라. 시설별 운영 시간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9조)

마. 자전거 이용료 및 감면 근거 신설(안 제20조·별표 1·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8조의5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28. ~ 8.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거창창포원의 지방정원 등록에 따른 법 적용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기휴원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자전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거창창포원”을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으로 “자연체험, 자연학습”을 “정원문화 체험”으로 한다.

제4조 중 “설치”를 “관리”로 한다.

제5조·제6조, 제8조·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

제6조(기능)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휴원일) ① 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

제9조(개방 및 운영 시간)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을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0조 조 제목 “(카페 입장료 등)”을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본문 및 제2항 중 “입장료”를 “입장료 및 자전
거 이용료”로 한다.

별표 2 키즈카페 입장료 란을 제1호로 하고 제2호 자전거 이용료를 별지와 같
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키즈카페 입장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을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용객의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u>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u>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p> <p><u>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5조(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위치)</u> ① 군수는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4조의2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친환경공간으로 거창창포원을 조성한다.</u></p> <p>②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p> <p><u>제6조(기능)</u> 창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u>생태자연관광 활성화</u>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u>생물종 다양성 증대</u> 3. <u>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u> 	<p><u>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u>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u>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p> <p><u>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창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5조(창포원의 등록 및 위치)</u>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창포원길 21-1에 둔다.</p> <p><u>제6조(기능)</u> 창포원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p>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및 북카페 등 운영

6.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개원 및 휴원) ① 창포원은 매일 개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창포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9조(운영·관람시간) ① 창포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

제8조(휴원) ① 창포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

제9조(개방 및 운영 시간) ① 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회의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

<p>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③ (생략)</p> <p>제20조(카페 입장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p> <p>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 ①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p> <p>② 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	---

[별표 2]

2. 자전거 이용료(제20조 관련)

구분	기준	이용료	추가요금
4인승, 6인승	1시간	4,000원	초과 30분당 500원
2인승		2,000원	
1인승, 어린이용		1,000원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1) 용어 변경(안 제20조의2·제48조·제61조)

2)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제8조·제31조·제33조·제35조·제58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신설(안 제15조제1항)

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완화 적용 사유 삭제(안 제20조의3제3항)

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15조의2·제26조·제30조의2)

1)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3) 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 마. 법령위임 필수조례 신설(안 제16조의2 · 제57조의3)
 - 1)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3년
 - 2)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 30퍼센트
- 바.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범위를 법에서 정한만큼 최대한 확대하여 반영(안 제27조)
- 사.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비(안 제57조의2 · 제61조의5 · 제71조)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의 종결 후 30일 후
- 아. 공동위원회 준용 신설(안 제74조의2)
- 자. 법령개정사항 반영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개정(안 별표 1~ 별표 5,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20조 · 제28조 · 제28조 · 제59조 · 제68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제25조 · 제43조 · 제57조 · 제59조 · 제72 · 제76조 · 제78조 · 제85조 · 제93조 · 제113조의3, 별표 1의2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제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7. 30. ~ 8. 19.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과 공동위원회 준용 신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 정부합동감사 권고사항인 법령위임 필수조례 신설과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경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 반영하였으며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적용 사유를 삭제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기존 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년 전자 유기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요양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9조 조 제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보호지구안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
-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제6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 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제113조의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제75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2, 별표 14, 별표 18,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의한 자문을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거창군 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u></p>	<p><u>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u>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u></p> <p><u>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p><u>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u>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⑤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u></p> <p><u>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u></p>	<p><u>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u></p> <p><u>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u>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신 설>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① 영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군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4.10.01>
- 2.~7. (생략)

<신 설>

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6.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완화범위는 영 제84조 및 제85조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차를 수정한 면적 기준 건폐율, 용적률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올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별표 23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동의가 있고,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삭 제>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준”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 및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필지를 분할하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지 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면적 4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2.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
-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2. (생략)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15. (생략)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삭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제3항 및 영 별표23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말한다.

- 1.~22. (현행과 같음)

<삭제>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15. (현행과 같음)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영 제72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15. (생략)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15. (현행과 같음)

<삭제>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
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
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
장, 장의사
- 2.~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
소 및 장례식장
- 7.~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
로 쓰는 시설
16. (생략)

<신 설>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
축제한) <신 설>

<삭 제>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
축제한) 영 제80조에서 “군계획조례
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
술소,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게
입제공업소, 장의사
- 2~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 7.~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
호의 장례시설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조례가 정
하는 건축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몰, 대형점

5.~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③ (생략)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7. (현행과 같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7조의2(전통시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2. 상업지역: 90퍼센트

제57조의3(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서 “군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 (생략)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가.~나. (생략)

② (생략)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군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 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 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적률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말한다.

제61조의5(전통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500퍼센트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보칙

제7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1조(회의록의 공개) 영제113조의 3제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4조의2(공동위원회에 관한 준용)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산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마목(동물원 제외)의 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

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도료류 판매소(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삭 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식물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정신병원 제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

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아목 (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애인식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 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기존주택은 증축·개축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삭 제>~~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삭 제>~~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 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1. 영 별표 19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정한다.
- 2. 영 별표 19 제2호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 설>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에 한정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증대하며 향노화힐링특구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특례를 정하여 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신설함(안 제5조의2·별표 1)
 - 1) 행정안전부 협의 내용
 - (가) 위치: 가조면 일부리 1307
 - (나) 종류: 지주 이용 간판 1개
 - (다) 규격: 10미터×5미터×10미터
 - 2) 향노화힐링특구에서 표시가능 광고물 등은 지주이용간판으로 한정
-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19조)
- 다.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및 반환사유를 명시함(안 제26조)
- 라. 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의2·제10조의4·제20조
-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6. 15. ~ 7.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별표 3)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건설팅: 전부 반영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고 향노화 힐링특구 광고물 등 표시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계시대 관리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 임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와 면적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나.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3. 네온류, 전광류 또는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한 결과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 제25조제5항”을 “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으로 하면 같은 조 제6항 중 “제제25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

이 신설하며, 별표 3(중전 별표 2) 중 그 밖의 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u>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포함</u>

별표 7(중전 별표 6)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한 경우	법 제20 조 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 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 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u>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2. 높이와 면적</p> <p>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p> <p>나.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p> <p>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p> <p>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p> <p>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p> <p>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p> <p>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p> <p>3. 네온류, 전광류 또는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됨</p> <p>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한 결과는 별표 1과 같다.</p>
<p><u>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u> ①~③ (생략)</p> <p><u>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u>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p>	<p><u>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u> ①~③ (현행과 같음)</p> <p><u>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u>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p>

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 (생략)

③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5. (생략)

<신 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제25조(교육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

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5. (생략)

③ (생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5.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의 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

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한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항노화힐링특구 광고물등 표시 기준(제5조의2제3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 (가로×세로×높이)	주소	이격거리
지주 이용 간판	1 (2)	10미터×5미터×10미터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7	640미터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신여 산림과장]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복지형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거창 향교 냉난방 시스템 설치 관련, 전기용량 증설 및 전기요금 증액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거창 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사업
 - 사업자 : 거창향교 전교 박정제
 - 사업기간 : 2021년 9월 ~ 11월(3개월간)
 - 사업량 : 12kw
 - 사업비 : 25,200천원(공모사업비 90%, 자부담 10%)
 - 기대효과 : 2,500천원/년 전기요금 절감
- 나. 추진사항
 - 2020. 10. : 2021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경제교통과)
 - 2021. 5. : 도시공원 점용 허가(산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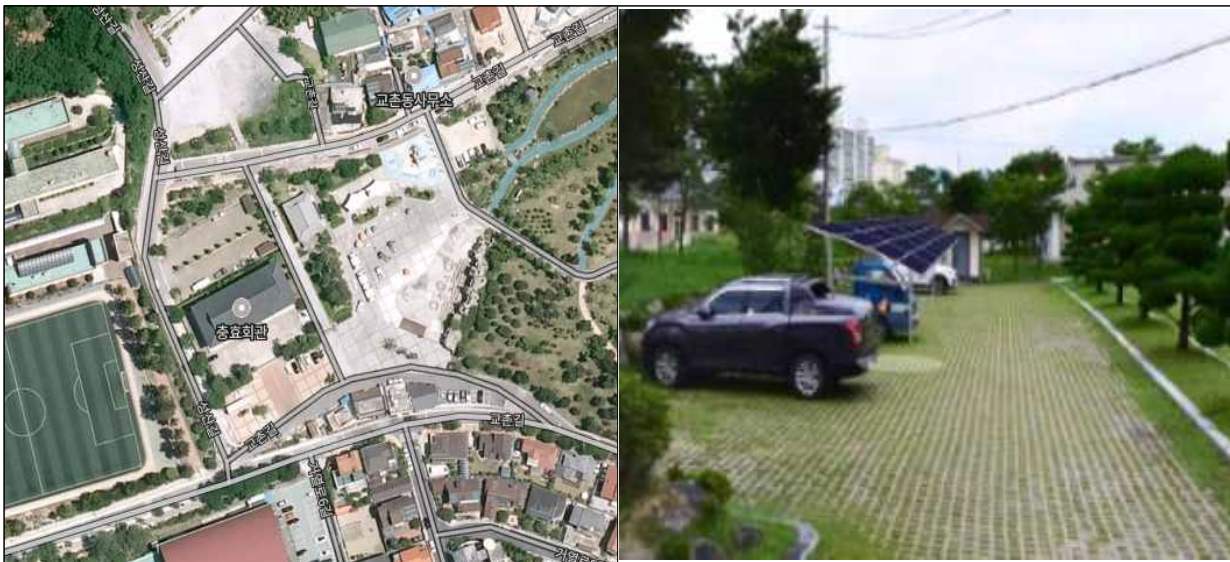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지목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설치 용량	비 고
거창읍 가지리 318-1	유지	7,779㎡	60㎡	12kw	

라. 향후 추진계획

- 2021. 11. : 공사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경제교통과)

마.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인 주민복지형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운영비 부담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관련법령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춘구 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나.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3년간)
- 다. 사업비 : 1,528백만원/연
(국 764(50%), 도 229.2(15%), 군 534.8(35%))
 - 주택 : 1,204백만원(국 602, 도 180.6, 군 421.4)
 - 비주택 : 172백만원(국 86, 도 25.8, 군 60.2)
 - 지붕개량 : 152백만원(국 76, 도 22.8, 군 53.2)
- 라. 사업량 : 420동/연(주택·비주택 철거 390, 지붕개량 30)
- 마. 위탁비용 : 122백만원/연(사업비의 8%)
- 바.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업체 선정, 계약 체결
 - 슬레이트 면적조사,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
 -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 아.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업체선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참가자격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 ⇒ 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자. 향후 계획
- 2021. 7. :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
 - 2021. 9. ~ 10. : 민간위탁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
 - 2022. 1.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4. 참고사항

가. 그간 추진현황

-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2013년) (단위 : 동)

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10,784	7,914	55	1,564	917	61	273

○ 추진실적

(단위 : 동)

구 분	철 거 현 황				잔여 슬레이트
	철거율(%)	계	환경과	도시건축과	
계	23.0	2,491	2,304	187	
2013년		138	129	9	10,784
2014년		162	100	62	10,622
2015년		262	199	63	10,360
2016년		189	136	53	10,171
2017년		368	368	-	9,803
2018년		230	230	-	9,573
2019년		358	358	-	9,215
2020년		568	568	-	8,647
2021년		216	216	-	추진 중

○ 추진방법

- 2013~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2017년 : 직접 수행(민간경상보조사업)
- 2018년 : 직접 수행(시설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개정(20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20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2021년 : 민간위탁 추진(한국석면안전협회)

○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20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 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 확대,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 (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나.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

- 2013~2016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
-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 수행하였으나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2019~2021년 현재까지 민간위탁 중임

다.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1.1. 환경부)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동의안은 군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지붕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2013년부터 2016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장감독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을 보완하고 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관 련 법 령



관계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장웅 건설과장]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 만료예정(21. 12. 25.)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 나. 주기장 현황

명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치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면적	5,863㎡	건축면적	99.75m (30평)	주기면수	약 120대
시설물	관리동 1동 (사무실, 회의실 등)				

- 다.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자 조건 : 거창군 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자 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정량+정성)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공개모집)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부과대상 : 수탁단체)
 -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 ※ 가격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관리동) 과세표준가액
- 사용기간 : 3년(1회에 한해 갱신 가능)

마.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군 의회 동의 : '21. 9.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인) : '21.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모집 공고 : '21.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1. 12.
- 행정재산 관리위탁, 민간위탁 공보게재 : '21. 12.
- 공영주기장 위탁운영(예정) : '21. 12.

바. 현장사진





4.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운영 현황

- 수탁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거창지회
- 수탁기간 : 2019. 12. 26 ~ 2021. 12. 25.(2년) / 최초 위탁
- 이용현황 : 일 평균 50대
- 위탁료 : 2019년 2,102,070원 2020년 3,565,050원

나.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9조제4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3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탁료를 순조롭게 징수하고 있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수요자 중심으로 주기장을 관리 운영하여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관련법령



관계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2021.12.31.) 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대지면적 : 36,376㎡ (토지소유자 : 거창군)
 - 연면적
 - 당 초 : 8,219㎡(선별3,499㎡, 저장1,780㎡, 기타 2,940㎡)
 - 1차보완 : 2,874㎡(선별1,171㎡, 저장1,467㎡, 기타236㎡)
 - 2차보완 : 1,510㎡(선별1,180㎡, 저장330㎡)
 - 처리능력 : 연간 15,000톤 처리
 - 선별시설 : 1일 50톤 처리, 2조식 프리트레이방식, 54라인 38등급
 - 저장능력 : 저온저장고 3,015톤 저장(당초 1,440톤→ 보완 3,015톤)

나. 위탁사무

- 시설 :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다. 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3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라. 소요예산 : 없음

마. 향후계획

- 운영주체 위탁 군의회 동의 : 2021년 9월
- 운영주체 공모 모집 및 선정 : 2021년 9 ~ 10월
- 거점APC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년 11월
- 위탁 운영 실시 : 2022. 1. 1 ~ 2024. 12. 31.

4. 참고사항

가. 그간의 추진사항

- 2005. 5. 19. : 서북부경남거점APC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2008. 9. 9. ~ 2009. 10. 25. : 서북부경남거점APC 건립
- 2009. 11. 17. ~ 2014. 12. 31. : (주)NH유통 1차 위탁 운영
- 2012. 7. 27. :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사업 1차 준공
- 2015. 1. 1. ~ 2018. 12. 31. : (주)NH유통 2차 위탁 운영
- 2019. 1. 1. ~ 2021. 12. 31. : (주)NH유통 3차 위탁 운영
- 2019. 12. 20. : 서북부경남거점APC 시설보완사업 2차 준공

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 제15조제1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동의안은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전문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5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관련법령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 6. 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 6. 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6. 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 6. 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 6. 12)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6조(위탁신청)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시설물 관리,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거창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2021.12.31.)됨에 따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마을센터와 지역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사무명	주요내용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군 단계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 마을만들기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 마을만들기 관련 지역 현안해결과 사후관리 - 지역개발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350백만원 정도 / 매년 농식품부 공모 -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주민교육과 경험습득 지원, 신규공모-사업추진-사후관리 활성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육성 및 확산 등

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안)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위 치 :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신활력공유센터 준공 후 이전)

○ 구 성 원 : 센터장 1명(상근 또는 반상근),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 구성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며, 센터역량강화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채용승계

다. 소요예산

구 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시군역량강화사업
합 계	87,000천원(군비)	350,000천원 (국70%, 도9%, 군 21%)
인건비	67,200천원 - 사무원 2,100천원×2명×12개월 - 초과 및 출장 300천원×2명×12개월 - 4대보험 등 800천원×12개월	78,000천원 - 센터장 2,500천원×12개월 - 사무원(팀장) 2,300천원×12개월 - 초과 및 출장 50천원×2명×12개월 - 4대보험 등 1,000천원/월
운영비	19,800천원 - 사무집기 임대·구입 - 사무용품 구입 - 전기·통신 요금 등	
사업비		272,000천원 -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 마을활동가 발굴·육성 -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 제20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와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해당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관련법령



관계법령 발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8조(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